

2020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무·기술직 신입사원 채용공고

스마트 시민기업!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미래를 함께 펼쳐갈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직급	직종	채용직무	필수자격 (상세보기1)	지원자격(각 호 모두 충족하여야 함)							
6급	사무직 (26명)	경영지원/ 사업관리 (25명)	일반 (2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단,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 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단, 현역의 경우 단계별 시험 응시 및 임용일('20.12.28.)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 결격사유 (상세보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공사 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인 영어 성적 자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는 해외사업 수행 등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 영어 성적을 요구 ※ 단, 고급자격증소지자(상세보기3)는 해당 분야 지원시 공인 영어 성적 불필요							
			장애인 (3명)		장애인등록자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전 산(1명)									
	기술직 (29명)	토 목 (9명)	일반 (8명)	응시분야의 기사, 기술사, 건축사(건축직)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table border="1"> <thead> <tr> <th>사무직(일반)</th> <th>기술직(일반)</th> <th>장애인 구분모집</th> </tr> </thead> <tbody> <tr> <td>토익 800점, NEW TEPS 348점, 토플 91점 이상</td> <td>토익 700점, NEW TEPS 300점, 토플 79점 이상</td> <td>토익 500점, NEW TEPS 220점, 토플 56점 이상</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성적은 영어시험 대체와 서류전형을 위한 자격기준으로만 활용 - 영어 성적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10.20. 이후 응시하고 접수마감일(2020.10.19.)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과 코로나19의 대응 조치로 공사의 공인 영어성적 사전제출 운영기간동안 공사에 제출하여 진위 여부가 확인된 영어성적 (2018.5.1.이후 국내에서 실시하고 2020.12.31.까지 기한만료 예정 성적)에 한함. * 조회 확인이 불가능한 특별시험, 국외응시 성적은 불인정하며, 상기 공인 영어 성적 외 다른 공인 외국어 성적은 불인정 - 공인 영어 성적은 텡스 관리 위원회(www.teps.or.kr)에서 최근 작성한 점수 환산표(conversion table)를 적용하여 산정 ◇ 기타: 임용일부턴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사무직(일반)	기술직(일반)	장애인 구분모집	토익 800점, NEW TEPS 348점, 토플 91점 이상	토익 700점, NEW TEPS 300점, 토플 79점 이상	토익 500점, NEW TEPS 220점, 토플 56점 이상
			사무직(일반)			기술직(일반)	장애인 구분모집				
		토익 800점, NEW TEPS 348점, 토플 91점 이상	토익 700점, NEW TEPS 300점, 토플 79점 이상			토익 500점, NEW TEPS 220점, 토플 56점 이상					
		장애인 (1명)									
		건 축 (10명)	일반 (9명)								
			장애인 (1명)								
		기 계 (4명)									
전 기 (3명)											
조 경 (3명)											

※ 모든 자격은 접수마감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 하나의 채용직무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중복지원 시 모두 무효 처리하며 추후 중복 지원으로 판명 시 모두 불합격 처리함.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

※ 가산대상 자격증 및 채용우대 지원자격(상세보기4)

- 가산대상 자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자격 하나만 가산함.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응시 직무의 가산대상 자격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함.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우대함. 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직무별 선 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2. 전형일정

※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안내는 채용홈페이지(<http://sh.scout.co.kr>)를 통해서 진행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20. 9. 29.(화) ~ 10. 19.(월), 18:00까지	합격자발표: 2020. 11. 4.(수)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2020. 11. 14.(토)	합격자발표: 2020. 11. 20.(금)
면접전형	AI면접	2020. 11. 20.(금) ~ 11. 23.(월)	면접대상자발표: 2020. 11. 26.(목)
	직무수행능력 및 인성면접	2020. 11. 30.(월) ~ 12. 3.(목)	기간 중 1일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발표: 2020. 12. 11.(금)	임용예정일: 2020. 12. 28.(월)

※ 각 단계별 전형내용 및 일정은 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공사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부여함.

3. 전형절차

□ 원서접수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동시 접속에 따라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 중이었던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시간까지 제출 완료하지 못한(접수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 접수기간: 2020. 9. 29.(화), 16:00 ~ 2020. 10. 19.(월), 18:00까지
- 접수방법: 채용홈페이지(<http://sh.scout.co.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 ※ 하나의 채용직무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중복지원 시 모두 무효 처리하며 추후 중복 지원으로 판명 시 모두 불합격 처리함.
- 접수시 작성내용: 응시원서, 역량기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입사지원서상의 성명, 생일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상의 성명, 생일이 한글자라도 상이할 경우, 시험(필기, 면접)에 응시할 수 없으니 입사지원서 작성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 전형내용

- 지원자격 적격 여부(공인영어성적, 필수자격증 등) 및 자기소개서 성실기재 여부를 확인하여 적격자에 대하여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기준

- 자기소개서 4개 항목 중 2개 이상 동일 반복
- 자기소개서 4개 항목 및 직무수행계획서 내 한 항목이라도 50% 미만 기재
- 동일 단어(문항) 반복 기재 등 미기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블라인드 위배 및 공사이름 오기재시 평가에 불이익 있음

* 역량기반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는 추후 면접전형 자료로 활용

○ **평가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평가한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0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 단,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처리하며,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하고 나머지는 절사함.
- 고급자격증 소지자는 공인 영어성적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필기시험 자격을 부여하나, 자기소개서 불성실기재자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평가결과에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자(과락자)는 제외하며, 합격인원은 배수 외 선발
- 서류전형 점수 배점

계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100점	70점	30점

* 가산점 부여(만점의 40% 이상 득점시):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3%, 2급 2%)

※ **블라인드 채용 관련 안내**

- 입사지원서상 사진등록, 학교, 학업성적, 주소, 출생연도, 가족관계 기재란 없음
- e-mail 기재시 학교명 또는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계정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시 나이,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이 드러나거나, 이를 유추 또는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11. 4.(수), 18:00 이후**

- 채용 홈페이지(<http://sh.scout.co.kr>)를 통해 발표, 필기시험 일시 · 장소 등 안내

□ **필기전형(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 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
- 일 자: 2020. 11. 14.(토), 시간·장소는 별도 안내
- 시험과목 (상세보기5)

계	직무별 전공과목(50문항)	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	인성검사(210문항)
100점	50점	50점	적/부

○ **합격기준**

-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서 인성검사 적격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 처리
-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각 과목별 필기시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후 더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채용 인원의 3배수(채용인원이 4인 이하인 직무의 경우 5배수) 범위 내 결정. 단,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처리하며,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하고 나머지는 절사함.
- 전공과목과 직업기초능력평가(NCS) 결과, 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과락)
- 전공과목의 경우 사무직 중 경영지원/사업관리 직무(일반, 장애인) 및 기술직 중 토목직무(일반, 장애인), 전기직무 분야의 경우 전공과목간의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분야별로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하며, 원점수와 조정점수 모두 과락기준에 해당할 경우 불합격 처리 (상세보기 6)

* 가산점 부여(만점의 40% 이상 득점시):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 10%), 고급자격증 소지자(5%),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5%)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2020.11.20.(금), 14:00 이후**

- 채용 홈페이지(<http://sh.scout.co.kr>)를 통해 발표
- 안내내용: 지원자 본인의 필기시험 점수, 합격자 커트라인, 인성검사 결과(적격여부)
(합격자) 필수 서류 제출 및 AI면접 일정 등 안내

□ 필수서류 제출 안내

- * 기간내 미제출자는 입사 의사 없음으로 간주하여 면접전형 응시 불가
- * 지원서 상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면접전형 응시 불가 및 불합격 처리
- 대 상: 필기 전형 합격자
- 기 간: 2020. 11. 20.(금) ~ 11. 24.(화)
 - 증빙서류 제출시기와 관련한 사항은 필기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공지
- 대상서류 (공인영어성적증명서, 자격증 외 대상서류는 접수마감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남자지원자에 한함, 병역사항 확인용)
 - 공인영어성적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 필수자격증, 고급자격증, 가점대상자격증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다문화가족 해당자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북한이탈주민 해당자에 한함)

공인 영어성적, 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에 대하여는 추후 관계기관에 사실 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허위의 내용 혹은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임용 후에도 당연 불합격 처분하며 적발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면접전형

AI면접

- 대 상: 필기전형 합격자
- 기 간: 2020. 11. 20.(금) ~ 11. 23.(월), 13:00까지
- 면접방법: AI면접(직무역량, 직무적합도 등), 기한 내 자택 등에서 면접 응시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AI면접	직무역량, 직무적합도 등	10점

- 합격기준: 기한내 미응시자 및 AI면접 결과 부적격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2020. 11. 26.(목)

직무수행능력 및 인성면접

- 대 상: AI면접 응시자 중 적격자 및 입사지원서 관련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검증결과 이상이 없는 자
- 기 간: 2020. 11. 30.(월) ~ 12. 3.(목), 기간중 1일, 시간·장소는 별도 안내

○ 전형내용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직무수행능력 (PT·그룹토론융합)면접	문제해결, 언어구사, 직무전문성 등	40점
인성(경영진) 면접	가치관, 직업윤리 등	50점

○ 면접방식

구 분	방 식
직무수행능력 (PT·그룹토론 융합)면접	직무관련 주제에 대해 지원자별로 발표 후 6인이내의 지원자가 1조가 되어 지원자 상호간 토론 진행 후 질의 응답
인성(경영진) 면접	3인이내의 지원자가 1조가 되어 지원자별 질의 응답

○ 합격기준

계	AI면접	직무수행능력면접	인성면접
100점	10점	40점	50점

- 직무수행능력면접과 인성면접의 각 면접유형별로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정점 중 최상 및 최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정점의 평균점수와 AI면접점수를 합산한 후 가산점을 더한 점수가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 범위내에서 결정. 단,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처리하며,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하고 나머지는 절사함.

* 가산점 부여(만점의 40% 이상 득점시): 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

□ 최종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 발표: 2020. 12. 11.(금), 18:00 이후

- 채용 홈페이지(<http://sh.scout.co.kr>)를 통해 발표, 신체검사 및 임용대상자 등록 등 안내

○ 합격기준

- 면접전형 합격자 중에서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1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인성(경영진)면접 고득점순, 직무수행능력면접 고득점순, 직업기초능력평가 고득점순, 전공과목 고득점순 등으로 순위를 정하며, 각 점수는 가산점 제외 점수로 함.
- 지원서 작성내용 및 자격증 등 제출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하여 허위의 내용이 작성·제출된 경우에는 추후에라도 불합격 처리

○ 예비합격자 운영

- 본 합격자와 동수로 예비 합격자를 선정·운영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시 예비 합격 여부 및 예비 합격 순위 발표
- 본 합격자의 임용 미등록, 신체검사 불합격, 결격사유조회 부적격 또는 본 합격자가 2021. 6. 30.이전 퇴직할 경우 별도 안내를 통하여 임용 예정

4. 기타 안내사항

□ 이의신청 안내

- 접수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채용홈페이지- 이의신청에 신청내용 기재
- 이의신청 처리대상: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

※ 이의신청 답변 예외 대상: ①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②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5. 유의사항

- 지원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 바라며, 입사지원서 제출후에는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각 단계별 전형내용 및 일정은 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및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사항 등은 개별통지 없이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오니 이점 착오 없기 바랍니다.
- 학력과 연령 제한이 없으나(단,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어야 함), 최종 합격 시에는 재학 등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허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또는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합격 취소되고 적발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조사)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및 가산 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국가 보훈처 및 지방 보훈청에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처란에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반드시 명시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인터넷 접수 시 작성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서 제출 전에 자격증 등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기 또는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전형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최종합격일 이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반환청구 기간내 요청시 반환합니다.
- 수습임용 후 최대 3개월간 수습기간을 운용하며 수습직원에게 대해 직무수행 능력 등 평가 후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지원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전형시 장애인 편의지원에 대하여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은 코로나19 등 채용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최종 신규 채용되는 직원 중 공사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http://sh.scout.co.kr>) “질문하기”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T.1600-3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공고에 미기재된 내용(필기시험범위 등)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 29.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 상세보기1 】 채용 직무별 필수자격증

○ 장애인 구분모집: 해당 직무별 자격증과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직 종	채용직무	직무별 필수 자격증
사무직	경영지원/ 사업관리	별도 자격증 없음
	전 산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작응용, 정보통신, 정보보안) 또는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기술직	토 목	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또는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토목시공, 도시계획, 상하수도)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건 축	기사(건축, 실내건축) 또는 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또는 건축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기 계	기사(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일반기계, 기계분야 소방설비) 또는 기술사(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소방)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 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정보통신) 또는 기술사(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정보통신)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조 경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또는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상세보기2 】

○ 우리 공사 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6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11.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에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 취소 또는 직권면직, 해임,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상세보기3 】

구 분	지 원 자 격
고급자격증 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u>변호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한 <u>공인회계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세무사법』 제3조에 의한 <u>세무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u>감정평가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법무사법』 제4조에 의한 <u>법무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의한 <u>공인노무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기술사법』 제2조의 <u>기술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건축사법』 에 제7조에 의한 <u>건축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상세보기4 】 가산대상 자격 및 채용우대 지원자격

○ 채용우대사항

구 분	우대사항 (가산비율 등)	확인방법	비 고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고급 자격증 소지자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 style="text-align: center;">변호사,공인회계사, 법무사,세무사,공인 노무사,감정평가사 자격증 소지자</p> </div> <div style="width: 45%;"> <p style="text-align: center;">입사지원시 공인 영어성적 불필요</p> </div> </div>	자격증 사본	<p>-매과목 40%이상 득점자에 부여</p> <p>-가산 대상 자격이 2개 이상 중복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하나만 가산함</p>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의 경우 TOPIK 5급 이상 취득자에 한함)	필기시험 만점의 5%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TOPIK성적표(해당자)	<p>-취업지원대상자가 가산대상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함</p>
북한이탈주민	필기시험 만점의 5%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p>-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직무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p>
한국사능력검정시험자격 취득자(1급, 2급)	서류전형 만점의 2%(2급) 또는 3%(1급)	자격증 사본	

* 모든 자격은 접수마감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직무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는 본인이 취득한 점수로 각 전형을 통과한 경우에만 합격 결정이 가능하며, 다만, 합격점수 및 순위는 가점한 점수로 함.

○ 채용우대 지원자격

구 분	지 원 자 격
장애인 (구분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채용예정 직무의 수행이 가능한 자
고급자격증 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u>변호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한 <u>공인회계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세무사법』 제3조에 의한 <u>세무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u>감정평가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법무사법』 제4조에 의한 <u>법무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의한 <u>공인노무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기술사법』 제2조의 <u>기술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건축사법』 에 제7조에 의한 <u>건축사</u> 자격을 취득한 자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조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div>
다문화가족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 및 그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만 지원 가능 - 국적 취득자의 경우 한국어 소통이 원활한 자(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북한이탈 주민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상세보기 5 】

채용직무		시험과목(과목별 50문항, 5지선다형)		인성검사	
		전공 필기시험(과목 선택)	직업기초능력평가(공통)		
사무직	경영지원 사업관리 (일반, 장애인)	법 학: 법학 전반 행정학: 행정학 전반 경영학: 경영학 전반(회계분야 제외) 경제학: 경제학 전반 회계학: 회계학 전반] 중 택1	· 의사소통능력 · 수리능력 · 문제해결능력 · 대인관계능력 · 조직이해능력 · 직업윤리	210문항
	전 산	전산학: 전산학 전반			
기술직	토 목 (일반, 장애인)	토목공학: 토목공학 전반 도시계획학: 도시계획학 전반] 중 택1		
	건 축 (일반, 장애인)	건축공학 전반			
	기 계	기계공학 전반			
	전 기	전기공학: 전기공학 전반 전자(정보통신)공학: 전자(정보통신)공학 전반] 중 택1		
조 경	조경학 전반				

【 상세보기 6 】

신입사원 채용시험 조정점수 안내1)

사무직 중 경영지원/사업관리 직무(일반, 장애인) 및 기술직 중 토목직무, 전기직무 응시생들은 전공과목의 난이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점수제를 시행합니다.

조정점수란 서로 다른 시험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변환한 점수로, 과목간 난이도에 따른 점수 차이를 보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높은 과목의 경우 평균이 낮으므로 조정점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난이도가 낮은 과목은 상대적으로 내려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정점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4항 [별표13]

$$\left[\frac{(\text{응시자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 \right] \times 10 + 50$$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

$$\sqrt{\frac{(\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2 \text{의 총합}}{\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참고로, 선택과목이 도입된 대부분의 국내시험들도 동일한 산식에 의해 조정점수를 산출합니다.

※ 대학 수능시험('99년 도입), 공인노무사('11년 도입), 국가공무원 8, 9급('13년 도입)

조정점수제 Q&A

1. 과락기준(만점의 40% 이상)은 어떻게 정하는지?

- 원점수와 조정점수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40% 이상일 경우(40점 이상) 과락을 면한 것으로 봅니다.
- 사시, 노무사 시험도 원점수와 조정점수 어느 하나라도 40점 이상일 경우이면 과락이 아닌 것으로 인정

(예시) 경영학 : ① 원점수(35점), 조정점수(41점) → 과락 아님
② 원점수(40점), 조정점수(37점) → 과락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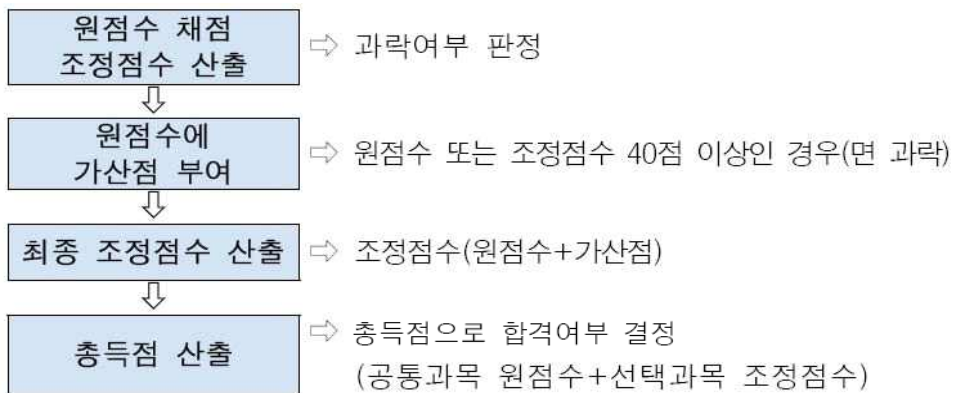
2. 가산점 부여시기 및 부여 절차는 ?

- 원점수에 먼저 가산점을 더한 후 이를 조정점수로 전환해 최종 성적을 산출합니다.
- 원점수를 조정점수로 전환한 후에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과목간 가산점이 상이하고, 과목내 원점수 순위가 변동되는 문제 발생(조정점수를 도입하더라도 과목내 순위는 동일해야 함)

〈 예 시 〉

구분	원점수 (가점) A	순위	원점수+가점 ⇒조정점수 B	순위	원점수 ⇒조정점수+ 가점 C	순위
가	91(1)	1	67.76	1	68.82	2
나	90(0)	2	67.33	2	67.82	3
다	85.5(10.5)	3	65.40	3	71.77	1

- 원점수에 먼저 가산점을 더한 후 조정점수로 전환하는 B의 경우 원점수와 순위는 동일, 원점수를 조정점수로 전환한 후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C의 경우는 순위 변동
- 가산점 부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조정점수 산출시 원점수 100점이 70점이 되는 등 점수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데?

- 조정점수는 서로 다른 시험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 상에서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으로 조정점수의 크기는 과목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따라서, 조정점수 산출시 반드시 점수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며, 평균, 표준편차, 개별 수험생의 성적에 따라 상승할 수 있습니다.